

부설연구소설립및운영규정

2004.05.01.제정 2005.12.09.일부개정

<연구지원팀>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설립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소의 효과적 운영과 학문연구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지식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연구소설립

제 2 조 (설립신청) ①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, 연구관련 부서장은 이를 연구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설립계획서
2. 본 대학교 전임교원 5인이상의 공동발의서
3. 당해 연구소의 규정
4. 기타 연구소 설립에 관한 자료

②위 제1항 제1호의 계획서에는 연구소 설립목적, 주요 연구분야, 조직 및 체계, 연구소 발전계획, 향후 2년간 예산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위 제1항 제3호의 연구소 규정에는 연구소 명칭, 목적, 사업내용, 조직, 연구원, 운영위원회, 재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(조개정 2005.12.9)

제 3 조 (설립기준과 요건) 연구소 설립기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분야는 본 대학교의 학술진흥을 위하여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, 기존의 연구소와 명칭이 유사하거나 연구범위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.
2. 연구소의 인건비와 기본 운영경비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.(개정 2005.12.9.)

제 4 조 (설립승인) 총장은 연구소 설립신청안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
제 5 조 (예외) 제2조, 제3조,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인정

하는 연구소를 따로 설립할 수 있다.

제3장 연구소운영

제 6 조 (연구소의 운영) ①연구소는 연구소규정에 입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 제반업무를 통괄 운영한다. 다만,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③연구소에는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,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
④연구소의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⑤연구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·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7 조 (연구소의 지원) ①연구관리위원회는 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에 대한 행·재정적인 지원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신설연구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비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(신설 2005.12.9.)

제4장 재정 및 사업보고

제 8 조 (예산) 연구소의 예산은 연구지원금, 수탁연구비 등의 사업수입금,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 (회계) 연구소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 (사업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매학년도의 사업 및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익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2. 차기학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장 평가 및 폐지

제11조 (평가) ①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회에 걸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.

②평가는 매년 4월중에 전년도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 등을 연구소 활동보고서로 제출받아 평가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행·재정 지원을 차등할 수 있다.

- ③평가에서 부실하다고 판정된 연구소는 타 연구소와 통·폐합 할 수 있다.
- ④제1항의 연구소 평가기준과 방법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 (폐지 및 해산)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관련 부서장은 연구소 폐지 신청안을 작성한 후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부의하여 총장이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.

1. 연구소의 사업이 목적과 위배될 때
2. 연구소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극히 저조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3.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할 때

②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기존 연구소는 본 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소 규정을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